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친일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다’도 표현의 자유”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의 친일 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표현하거나 민문연을 ‘친북단체’로 선정한 보수 시민·언론단체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민문연과 임준열 소장 등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이 이적행위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보수 시민 및 언론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적행위’ 표현과 친북단체 선정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민문연은 2005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해 3천여명의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신혜식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독립신문에 며칠 뒤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친일청산작업은 친북·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전복 시도가 공산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적행위”라는 제3자의 시평을 실었다.

신씨 등은 민문연 앞에서 ‘민족말살연

구소’, ‘패륜아’라고 외치며 현관을 때어 내는 등 수차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보수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본부장 서정갑씨 등은 같은 해 12월 친북인사와 친북단체를 선정하면서 민문연을 포함시키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민문연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이적행위’ 표현 및 친북단체 선정,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을 모두 인정해 총 6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씨 등이 시위를 벌이면서 인신공격과 모욕을 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봐 민문연에 1천700여만원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나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

는 특성이 있어서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로 규정돼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해 비유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표현은 민문연 등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념 논쟁에 있어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로 이념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8년 7월 29일

강동순, 신현덕·이정식 상대 손해소 기각

강동순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이사와 이정식 CBS 사장을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 10일 기각됐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병실)은 이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신 전 대표이사의 녹음행위에 대해 “진본이 있는 5명이 참석한 비공개 저녁식사 모임에서 그 중 일원인 피

고 신현덕이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소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녹음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신 전 대표이사가 이정식 사장에 녹음기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원고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의 사적 생활도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 △이 사건 비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중대히 침해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신현덕의 전달행위를 위법하게 볼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강동순 전 의원은 신현덕 전 대표이사와 이정식 CBS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8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바 있다.

미디어오늘 2008년 7월 24일

“명예훼손 글 방치한 포털 3000만원 손해배상하라”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에 해당하며,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은 포털이 알아서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2일 김모(32)씨가 포털 뉴스로 게재된 기사, 블로그·미니홈피에 게시된 글, 그리고 이 게시물들에 달린 ‘댓글’ 등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네이버·다음·싸이월드·야후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모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액은 회사별로 네이버 1000만원, 다음 700만원, 싸이월드 800만원, 야후 500만원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총 1600만원의 책임을 물었다.

김씨는 2005년 5월 자신이 사귀던 여성 서모씨가 자살하자 소송을 냈다. 서씨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김씨가 임신

한 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이를 항의하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딸이 이때 받은 충격으로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을 실은 직후였다. 이어 각종 포털에 김씨의 실명과 사진·소속·전화번호 등이 게재되고 비난 글들도 잇따랐다.

김씨는 “임신한 여자친구를 버린 과립치한 남자”로 낙인찍혔고, 네티즌들의 협박을 받아 이사를 가고 다니던 직장도 대학도 그만뒀야 했다.

이에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가 취재와 편집, 배포 기능을 갖춘 ‘언론’ 매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언론으로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포털이 제목을 붙이고, 게재 여부와 위치 및 기간 등을 정해 기사를 실는 것이 ‘편집행위’에 해

당한다고 봤다. 또 포털이 하루 평균 5000~1만 건의 기사를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네티즌들에 전달하고 댓글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기사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달린 댓글, 카페·블로그·미니홈피 등에 게시된 글들을 방치했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처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이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 등이 나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스스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8년 7월 3일

미 연방법원 “익명의 소식통 공개 안 해도 된다” 판결

신문기사를 쓰면서 언급한 익명의 소식통 신원은 공공의 알 권리가 중요한 경우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24일 내려졌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이날 방위산업 스파이에 대한 신원을 건네준 미 행정부 내 소식통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것을 거부, 소송을 당한 워싱턴 타임스의 국가안보 전문가 빌 거츠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빌 거츠 기사는 지난 2006년 5월 16일자 신문에 중국 출신 엔지니어 치막과 그의 친인척들이 미 국방부 군사기술 기밀을 빼내 중국에 건네준 사실을 보도하면서, 법무부 내 관리로부터 신원을 확인해 보도했었다.

이로 인해 거츠 기사는 연방 보안당국으로부터 법무부 내 신원 정보 제공자들

밝히려는 요구를 거절, 법정에서 서게 됐다.

재판장 코맥 카니 판사는 “미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최고로 중대한(paramount) 권익이다”고 지적하고 “거츠 기사가 스파이의 신원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을 위한 서비스’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 거츠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카니 판사는 이어 “제이 브래트 연방 검사 측이 주장한 항소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카니 판사의 이번 판결은 최근 뉴욕타임스 등 일부 신문에서 익명의 소식통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법정모독 혐의로 기자들이 구류형을 받거나, 거액의 하루 단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반하는 것이다.

빌 거츠 기사의 변호사 찰스 리퍼는 “미국에서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지가 오래 됐었다”고 지적하고 “물론 법정마다 판결은 다르겠지만 이번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추론은 매우 시려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거츠 기사는 선고 이후 “익명의 소식통은 바로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자유의 생명선이다”고 지적하고 “미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조항은 도전을 받았었으나 시정됐으며, 만일 그것이 없다면 정부의 실정과 권력 남용은 시정되거나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2008년 7월 25일

인터넷 댓글 실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길 때 아이디(ID)나 필명이 아닌 본인 실명이 게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시키더라도 가명이나 별명을 사용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방통위가 검토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의 본인확인제 수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도입된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포털·UCC(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 2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한정됐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이트 종류를 따지

지 않고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넘으면 무조건 본인확인을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때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현재 37개에서 268개로 늘어나게 된다.

나현준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면서 악성 댓글 비중이 1.9%포인트 감소했고 심각한 악성 댓글 비중도 8.9%에서 6.7%로 줄었다"며 "본인확인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 글이나 자료를 게시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을 표시하

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악성 댓글 옆에 자신의 이름이 함께 보여야 네티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제도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공청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창근 교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수 없다"며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의 익명성을 약용한 모욕, 명예훼손, 악플, 거짓여론 형성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를 구제하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08년 8월 8일

법원 "PD수첩, 정정보도하라"

광우병 논란을 촉발한 MBC의 지난 4월 29일 보도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법원이 "사실과 다른 만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이어 법원도 PD수첩의 일부 보도가 허위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PD수첩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성곤)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PD수첩은 다우너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로 인식하게 한 부분 등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우너소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600마리의 다우너 소가 발생하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PD수첩이 후속 보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정보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풍영상 속 다우

너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달라'는 원고측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정정보도를 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 유전자형으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판단하기는 힘든 만큼 MM형 유전자가 많은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해도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보도는 아니지만 나라별로 분류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볼 때 그 중 몇 가지가 수입된다는 식으로 특정해서 보도했어야 했다"며 반론보도로 이를 바로 잡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PD수첩이 인간광우

병으로 숨진 것처럼 보도한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보도는 허위이지만 후속 정정보도를 했기 때문에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치를 할 수단이 없다", "라면스프나 알약 캡슐 등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보도가 아닌 취재팀의 판단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만큼 정정·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MBC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방송 중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낭독해야 한다. MBC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이를 받아들일지 혹은 항소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08년 8월 1일

‘일심회’ 피의사실 공표, 국가배상 판결

간첩단으로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간첩단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은 ‘일심회’ 관련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고 말한 것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수집해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장민호씨 등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김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장씨에게는 7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이 불거진 2006년 10월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취재진에게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장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이 간첩 혐의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발표하는 데 한정돼야 하는 수사기관의 발표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이 ‘일심회’ 수사를 지휘했고 국민들은 국정원장의 발언에 신뢰성을 가졌다”고 말해 국정원 수장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일신문 2008월 7월 10일

KBS ‘방통위 제재’ 불복 소송

KBS가 감사원 특별감사 비판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조치에 불복,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KBS는 이와 함께 본안소송도 제기, 소송 판결 전까지는 방통위 제재 효력이 중지된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BS는 최근 방통위가 “감사원 특별감사와 관련해 ‘KBS 뉴스9’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만큼 ‘주의’ 조치를 방송 고지하라”는 결정에 불복, 방송제재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KBS가 감사원 특별감사에 대해 지난 5월 22일과 6월 11일 ‘KBS

뉴스9’를 통해 ‘공영방송 장악 의도’, ‘공정성 훼손 우려’, ‘표적감사 비판 확산’ 등 제목으로 자사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권이나 단체 등의 주장을 중점보도,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지난달 28일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KBS 측에 명령 7일 이내에 ‘KBS 뉴스9’ 프로그램 종료 시 이 같은 주의조치 내용을 고지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KBS는 “이번 특별감사가 KBS에 대한 압박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회적으로 제기됐고 KBS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평이 여론조사를 통해 사실로 나타난 데다 이 사건 보도는 공적

인 관심사항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KBS 측이 소송과 함께 “방통위의 주의 제재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주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 뉴스 2008년 8월 5일

“학교 비방했다고 제적한 것은 부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교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한 박씨씨가 상지대학교를 상대로 낸 제적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지대는 지난 1994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 입학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김 전 이사장측 구인원진과 이후 선임된 임시 이사들 사이에 갈

등이 지속돼 왔다. 편입생이었던 박씨는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학교의 저지로 무산되자 언론사 두 곳과 인터뷰를 했다. 박씨는 ‘학교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고 있다’, ‘(학교에) 반대가 득실거린다’ 등의 표현으로 학교를 비방했다.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며 박씨를 제적했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인터뷰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반대가 득실거리는 것’이라는 등 발언이 학교 임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한 것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되지만 박씨가 학교 직원·학생 등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제적 처분은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 2008월 8월 18일